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주 민 등 록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고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함.
-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에 대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 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
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
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을 “해당 시·군 또는 구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를 “성폭
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
합지원센터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
의 제10호)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를 “임시조치
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
11호) 중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103
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로, 같은 조 제14호(종전
의 제12호) 중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119조제
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1호의5서식, 제1호의6서식, 제1호의7서식, 제1호의8서식, 제1호의9서식, 제1호의10서식, 제1호의11서식, 제1호의12서식, 제1호의13서식, 제1호의14서식, 제1호의15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4호의3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1호의5서식, 제1호의6서식, 제1호의7서식, 제1호의8서식, 제1호의9서식, 제1호의10서식, 제1호의11서식, 제1호의12서식, 제1호의13서식, 제1호의14서식, 제1호의15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정정·변경 []삭제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청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기록 신청	기록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관계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세대주와의 관계	※ 기록 대상자(외국인등)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속할 세대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정정· 변경 신청	대상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정정· 변경사항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기록 대상자(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 변경 전		정정· 변경 후	

삭제 신청	대상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 호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 기록 [] 정정·변경 [] 삭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기록 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자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체류지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외국인등이 체류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 3. 외국인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계기관 자료열람 동의서

본인은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정정·변경·삭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등록자료, 국내거소신고 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은 본인이나 속할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에 관한 정정·변경 또는 삭제는 외국인 본인 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록 대상자’의 성명란에는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성명란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들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이 삭제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들이 체류지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들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 가족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들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6~9개월 이내

변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의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변경신청 처리상황 SMS 수신 : 동의[], 미동의[]	
	신청인의 지인의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사유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밀봉)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4. 변경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 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읍·면·동·출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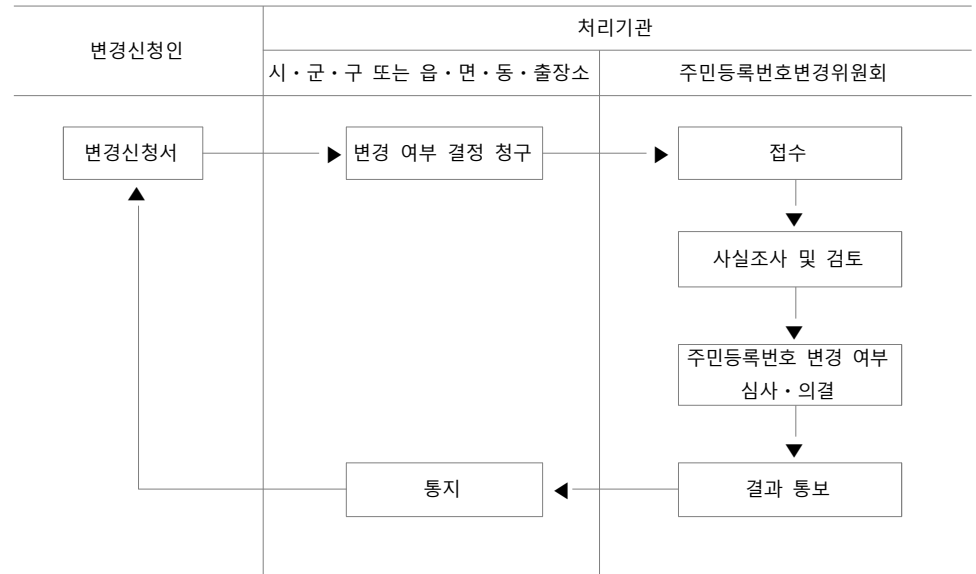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관한 유의 사항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출입국 자료 및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융회사 등에게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변경신청 이후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변경된 사실을 변경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과는 별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리인 [] 선임
[] 변경 통지서
[] 해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통지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지인 (변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예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선임·변경·해임)일	본인서명 또는 인감 날인	(서명 또는 인)
	변경신청인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존속·비속 [] 형제자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번호 [] 변경
[] 이의 신청 취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은 즉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하 사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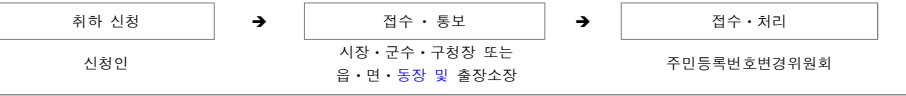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붙임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또는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변경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에게 통지 시 미가재		

※ 유의 사항

1.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보험카드 등 주민등록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을 하여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 정 기 관 명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승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호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아래와 같이 통
보합니다.

성 명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주민등록번호 부여 당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번호	
	변경 후 번호	
변경 사유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승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사건번호				
변경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주문				
근거법령				
결정 일자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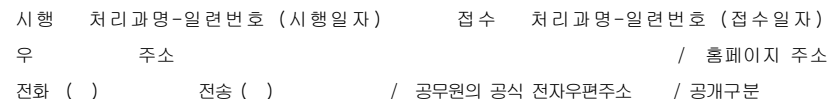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건번호			
신청인 (변경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소명 방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귀중

[]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출력일	
세대주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남/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남/여)	거주 여부 확인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확인자 의견란					

(이장·통장 확인경위 및 의견진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전입·주민등록 신고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원)
확인자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장·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명부

주인등록 전출자 명부

주인등록 전입자 명부

열람대장

일련 번호	열람일시 연월일	열람(교부)신청자			피 열 랐 자			열람방법 (본인·세대원·기타)	열람사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268mm×190mm[백상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

연번	신 고 연월일	해 외 체 류 신 고 자					통보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현 주 소	신 고 주 소	

※ 통보일자 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68mm×19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법무부장관
(경유)
제목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해외체류신고자 명단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외체류신고 일자	비고

끝. ※ 위 서식은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체류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성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해외체류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국일자	비고

끝. ※ 위 서식은 법무부에서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성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우)			
		휴대전화번호		
신청 대상 건물·시설 주소지	주소 (우)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세대주 변경	[]휴대전화 문자 전송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휴대전화 문자 전송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휴대전화 문자 전송	[]우편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실이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규, []변경,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의 사항	
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6.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9.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 외 이 주 신 고 증 명 서			
신 고 인 성 명		신고연월일	
주 소			
이 주 지 역			
이 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위 외 명은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연번	신 고 연월일	국 외 이 주 신 고 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신청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출 국 일 자	주민등록표 처리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 계	일 자	신청자 성 명	이주국	이주종류	일 자	수령자 성 명		

※ 국외이주신고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출국하기 전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주민등록표를 처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송부합니다.

1. 집계표

계	기 송 부	금 회 송 부	반 송 분 (지문 재채취)
장	장	장	장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명단

인수자 : 인계자 :

일련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비 고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장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전제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제)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인·세대원이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출입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or abstract

※ Please read the guidanc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before you fill out the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Front)

Applicant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 Insert your district, city, and province only. (Detailed address not required)	
	Relationship (to the person whose info is requested)	Phone No.
	☐ Apply for fee exemption ※ Regarding eligibility for fee exemption, please refer to Note 3 on the back page.	
Applicant (Business)	Name of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n No.	
	CEO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Business)	
	Address	
	Name of Visitor Resident Registration No. Contact No. (Visitor)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 Leave this section blank if you are requesting your own information or copy/abstrac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nformation to be Provided	Request ☐ JA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ne can request for necessary information only from the list below of information provided on a copy or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If you do not choose either "Included" or not, only the basic information such as name, date of birth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the person concerned will be provided.	
	☐ All items of a copy included ☐ All items of an abstract included	
	[] copy (ies)	1.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Fill in : the last ____ years included
		2. Reason for household registration ☐ Included
		3. Date of household registration ☐ Included
		4. Date of event / Date of report ☐ Included
		5. Reason for change ☐ Included(☐ Household, ☐ Members)
		6. Names of householder, members and foreigner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 Included
		7. Last 7 digits of resident registration no. ☐ Included(☐ Self, ☐ Members)
8. Members'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 Included		
9. Cohabitants ☐ Included		
Abstract Issuance [] copy (ies)	1. Personal information changes ☐ Included	
	2.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Fill in : the last ____ years included	
	3. Name of and relationship to the previous householders in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Included	
	4. Last 7 digits of resident registration no. ☐ Included	
	5. Names of householder,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 Included	
	6. Date of event / Date of report ☐ Included	
	7. Reason for change ☐ Included	
	8. Military service records ☐ Included(☐ Basic(Date of enlistment/discharge), ☐ All included)	
	9.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 Alien registration no. ☐ Included	
Purpose		
Evidentiary documents		
I hereby apply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Articles 47 and 4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Day Month Year		
To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210mm×297mm[White paper (80g/㎡) or Medium quality paper (80g/㎡)]		

Items to be checked by relevant public authorities	Whether the applicant is exempt from fees for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 of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Consent to Sha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hereby give my consent for abovementioned relevant public authorities to check out my administrative information on whether I am exempt from fees for the providing information on my resident register or issuing its copy or abstract, through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you do not agree to the verification by relevant public authorities, you must submit documents that verifies the information concerne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Notes	
1. When you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 or abstract, you must submit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you must submit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domestic resident report card. If you visit as a representative of your company, you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as well as your employment ID or a proof of employment. 2. When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check your or his/her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the copy or abstract only by submitt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you or he/she can do so by printing your or his/her name on a digital signature pad. 3. Those who are eligible for fee exemption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e as follows: a.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pplies for it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of Article 29(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b. Where a recipient under Article 2(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ies for it; c.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tropolitan Cit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ity/Country/District/Town/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such as in the event of disasters; d. Where fee exemption for provid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is prescribed in any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national independenc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pplies for it; f. Where a person who ha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for it; g. Where a patient suffering from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register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Etc.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h. Where a war veteran register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of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applies for it; i.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and determined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pplies for it; j. Where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k. Where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Article 5 or Article 5-2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pplies for it; l. Where fee exemption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m. Where the first copy of abstract of a person whose birth has been registered is issued. 4. Select either "Included" or not for each numbered item o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section. 5. In some cases, such as when you need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of a debtor in order to register his/her inheritance by subrogation, you may request or be provided with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6. As for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when you choose "Fill in", the period should be filled out by the year. 7. For the issuance of an abstract of resident register: As for the "3. Name of and relationship to the previous householders in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information, if the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is a legal adult, the person concerne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can choose "Included." And, if the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is a minor, a household head, a lineal ascendant, 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can choose "Included."; as for the "8. Military service records" information, only the person concerned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as well as your family member referred to in the Article 29 (2) 5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can choose "Included." 8. If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be issued with a copy or abstract of your resident register, he/she must fill out the "Purpose" section because the purpose shall be printed on the issued copy or abstract, and in case of applying for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he/she must submit separate evidentiary documents. 9.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of Article 37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f you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abstrac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you sha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less than thirty million won. 10. If you wish to request information on the register of more than one person or receive their copies/abstracts with the same evidentiary documents for the same purpose, you may apply for them all at once by using Form 7 and Form 8. In that case, you must put the two forms together in order, fold the first page (Form 7) in half, and stamp your personal seal in the center where the edge of the folded paper meets the next page (Form 8). 11.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o" section.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한다.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남 또는 충청·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열람	[]등본 사항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등본 사항 전부 포함	[]초본 사항 전부 포함	
위임 내용 (신청내용)	등본 교부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포함
		5. 변동사유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들의 이름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9. 동거인	[]포함
	초본 교부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포함
		7. 변동사유	[]포함
		8. 병역 사항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이
가
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_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	-----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 사항

-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처럼 허가·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자격(등록)번호: 사무소명: 연락처: 소재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 사항

-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 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을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

[illegible]

※ 작성요령

1. "공용 여부"란에는 공용인 경우 "○", 공용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관·법인명"란에 **행정기관과** 부서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란에 방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기관·법인명"란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사용용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64mm×257mm[백상지(80g/㎡)]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즉시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해제) 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신칭인과의 관계」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중에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 []해제 신청)합니다.

이
무
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제)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첨부 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_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	---

유의 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4 -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조사회사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 계약자·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등,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15.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열람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자(외국인은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초 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의
예
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			
번호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록 상 태
※ [병역사항]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같을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은 모든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 호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은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고 (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과태료 영수필 통지서

제 호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시·군·구 금고 (인)
(은행, 우체국)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인)

영수증

제 호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군·구 금고 인
(은행, 우체국)

210mm×297mm[백상지(80g/㎡)]

과태료 수납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페이지:							
일련 번호	접수일자 사유발생일자	신고의무자		신고지연자	위반내용	금액	납부 기한	수납 일자	독촉장 발부일자	체납처분 일자	비고
		성명	주소								

364mm×257mm[백상지(80g/㎡)]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군·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지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의무자와의 관계
지연 신고(신청) 내용	지연 시작일(발생일)	지연 신고(신청)일	
	지연 내용	지연 기간	
	지연 사유		
과태료 부과 금액		경감 사유	

년 월 일

※ 신고 지연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 사항

-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칸과 ‘경감 사유’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지배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열람·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우편물 발송 확인서			
	우편물 발송기관	기관명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차 발송일	2차 발송일	
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 기관 (인)	

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 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	---

유의 사항

-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우편물 발송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 자료 제공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지배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 대상자	대상자 수: 총 명
	대상자 목록: 붙임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불임		
	우편물 발송 확인서		
	우편물	기관명	
	발송 기관	대표자	연락처
	송달 대상자 대상자 수: 총 명		
	대상자 목록: 불임		
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 기관 (인)

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관 년 월 일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	---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 자료를 이용·활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붙임에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 문서로 신청할 때는 방문자 항목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 소의 <u>장이</u> 발급한 상담사실확 인서	4. ----- ----- <u>성폭력피해상담 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u> ----- --
5. ~ 8. (생 략) <u><신 설></u>	5.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 라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 실 확인서
<u><신 설></u>	10.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 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보 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 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 조에 따른 <u>임시보호명령결정 서의 등본 또는 초본</u> 이나 피 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 ----- <u>임시조치결정서, 임 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u> ---- ----- -----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 조제1항에 따른 <u>고소·고발사 건처분결과통지서</u>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 3조제1항에 따른 <u>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통지서</u>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 조제4항에 따른 <u>사건처분결과 증명서</u> <u><신 설></u> <u><신 설></u>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 9조제2항에 따른 <u>사건결정결 과 증명서</u> 15. <u>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u> 16.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 2항에 따른 <u>수사결과 통지서</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2